

거창군 폐기물관리예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04 ~5
----------	---------

제출일자	2004. 1.
제출자	거창군수

■ 개정이유

- 폐기물 재활용사업의 추진에 따른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사업과 관련한 조례 신설로 음식물쓰레기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시행으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 골자

- 군민의 청결유지 책무 (안 제4조)
 - 청결유지 책무, 청결유지 조치사항, 청결유지 이행 명시
-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조치근거 마련 (안 제6조)
 - 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대상 : 50가구 이하마을 및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명시 (안 제7조)
 -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변경 (안 제26조의2)
 -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지급
 - 1인당 포상금은 1회 2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함.
- 음식물쓰레기 관련 규정 삭제

■ 개정근거

- 폐기물관리법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 쓰레기투기 단속·포상실적과 개선대책 (환관67511-11260)
-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환관11060-11817)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라함은 사업장폐기물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중 제7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청결유지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 기타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 ② 이 조례는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
- ③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kg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을 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외지역 중 다수인이 모이는 공원·유원지·등산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그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중 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하고, 제7항을 신설한다.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중 제명을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골목길쓰레기 및 자연정화 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 만을 담아야 한다.

제18조 제1항중 “일반용 봉투”를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쓰레기봉투”로 하며,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 제1항 제3호중 “일반용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하고, 동조 제3항, 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제24조중 “제42조”를 “제41조”로 한다.

제26조중 제명을 “과태료의 처분 및 통지”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하며, 제26조의2를 신설한다.

제26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1인당 포상금은 1회 2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 후 지급한다.

③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

제30조 제1항 중 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의3】 을 삭제한다.

【별표6】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7】 중 제17호 및 제18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신·구 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사업장폐기물</u>”이라 함은 <u>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u></p> <p>3 ~ 6 <생략></p> <p>7. “<u>음식물쓰레기</u>”라 함은 <u>식품의 생산 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u></p> <p>8. “<u>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u>”이라 함은 <u>시행규칙 별표4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u></p> <p>9. “<u>음식물쓰레기 감량화</u>”라 함은 <u>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또는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u></p> <p>10. “<u>음식물쓰레기 재활용</u>”이라 함은 <u>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용으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 하는 것을 말한다.</u></p> <p>11. “<u>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u>”이라 함은 <u>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u></p> <p>12. <생략></p> <p>13. “<u>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u>”라 함은 <u>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u></p>	<p>제2조(정의)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사업장생활계폐기물</u>”이라 함은 <u>사업장폐기물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u></p> <p>3. ~ 6 (현행과 같음)</p> <p>7.(삭제)</p> <p>8.(삭제)</p> <p>9.(삭제)</p> <p>10.(삭제)</p> <p>11.(삭제)</p> <p>12.(현행과 같음)</p> <p>13.(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분리수거, 자원재활용, 대청소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 설></p> <p><신설></p>	<p>제4조 (삭제)</p> <p>제4조의 2 (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4조의 3(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p>제4조의 4 (청결유지 이행)</p> <p>① 제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u>생활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u></p> <p>② 이 조례는 <u>법 제1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u></p> <p><신 설></p> <p>제6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p> <p>① <u>거창군 전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u></p> <p>② <u>법 제13조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당해지역에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u></p>	<p>② <u>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u></p> <p>제5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u>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 기타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 에 적용한다.</u></p> <p>② 이 조례는 <u>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u></p> <p>③ <u>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kg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 례를 적용 한다.</u></p> <p>제6조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 등)</p> <p>① <u>군수는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을 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 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외지역 중 다인이 모이는 공원·유원지·등산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③ <u>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p> <p>① ~ ④ <생략></p> <p>⑤ <u>음식물 쓰레기는 배출하기전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u></p> <p>⑥ <u>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군수가 정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u></p> <p><u><신설></u></p> <p>제9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p> <p><u>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u></p> <p>1. <u>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u></p>	<p>③ (삭제)</p> <p>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삭제)</p> <p>⑥ (삭제)</p> <p>⑦ <u>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u></p> <p>제9조 (삭제)</p>

현 행	개 정 안
<p>2. <u>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의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u></p> <p>3. <u>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u>은 재활용하거나 <u>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 출하여야 한다.</u></p> <p>4. <u>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 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u></p> <p>5. <u>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생과 오수의 유출을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 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u></p>	
<p>제10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p> <p><u>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1. <u>별지 제9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u></p>	<p>제10조 <삭제></p>

현 행	개 정 안
<p>2. <u>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하며,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11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① <u>군수는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p> <p>① <u>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쓰레기, 자연정화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u></p> <p>② <u>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병봉괴성 봉투와 P.P포대로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엷은 청색으로 한다.</u></p> <p>③ <u>쓰레기 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1”과 같다.</u></p> <p>④ <u>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운반이 용이 하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 하여야 한다.</u></p>	<p>제11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① <u>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p> <p>① <u>쓰레기 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골목길쓰레기 및 자연정화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야 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p> <p>① <u>일반용 봉투는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투공급을 아니할 수 있다</u></p> <p>1 ~ 4 (생략)</p> <p>③ <u>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u></p> <p>④ <u>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 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u></p>	<p>제18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p> <p>① <u>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쓰레기 봉투는</u> ----- ----- ----- -----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p>④ <삭제></p>
<p>제21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p> <p>① (생략)</p> <p>1 ~ 2. (생략)</p> <p>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u>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u></p> <p>② (생략)</p> <p>③ <u>음식물 쓰레기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u></p> <p>④ <u>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5의3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u></p>	<p>제21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p> <p>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쓰레기봉투</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p>④ <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 (수수료의 감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할 수 있다.</p> <p>1. <u>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u></p> <p>2. 제1호 외의 자로써 군수가 정하는 자</p> <p>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제 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7”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p> <p>제26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포상금 지급 등)</p> <p>① ~ ③ <생략></p> <p>④ <u>군수는 폐기물등의 불법투기행위의 적발신고로 인하여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신설></u></p>	<p>제23조 (수수료의 감면 등) ----- ----- ----- -----</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u></p> <p>2. (현행과 같음)</p> <p>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제41조 ----- ----- -----</p> <p>제26조 (과태료의 처분 및 통지)</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p>제26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① <u>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② <u>1인당 포상금은 1회2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 후 지급한다.</u></p> <p>③ <u>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 (보고 검사 등) ① (생략)</p> <p>1 ~ 5 (생략)</p> <p>6. <u>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u></p> <p>7. <u>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하는자.</u></p>	<p>제30조 (보고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삭 제></p> <p>7. <삭 제></p>

【별표 1】**쓰레기 봉투의 크기 및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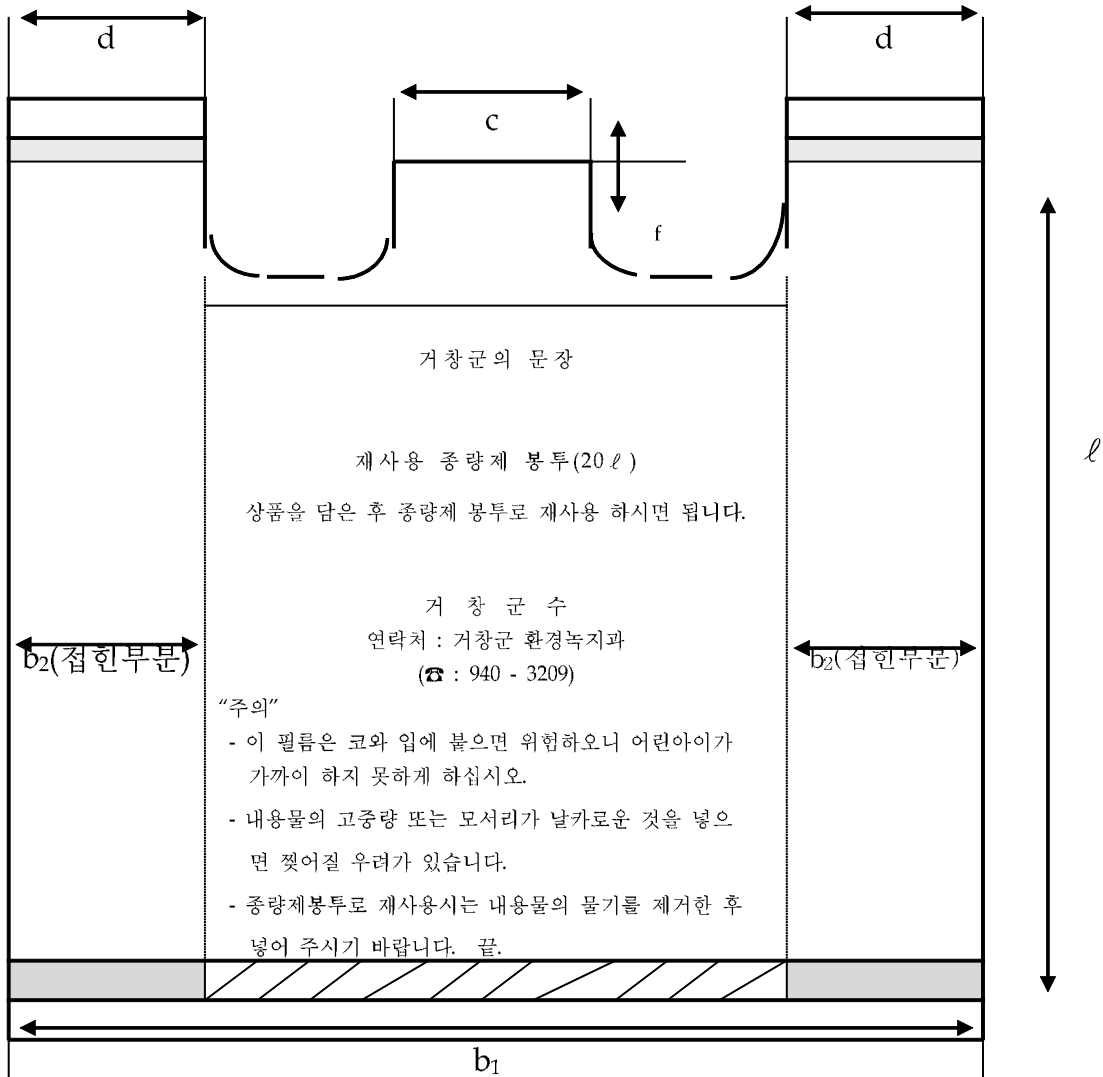
봉투의 용량(리터)	용도
3	일반용(가정, 사업장) <u>음식물전용</u>
5	일반용(가정, 사업장) <u>음식물전용</u>
10	일반용(가정, 사업장) 공공용, <u>재사용</u>
20	일반용(가정, 사업장) 공공용, <u>재사용</u>
50	일반용(가정, 사업장) 공공용, <u>재사용</u>
100	일반용(가정, 사업장)
100(P · P)	일반용(가정, 사업장)

【별표 2】

쓰레기봉투의 사양

□ 재사용봉투

1. 봉투 형태



비고 1. l 은 봉투의 높이, 봉투의 너비는 접힌부분을 펼친 전체너비 b_1+2b_2 로 하고, b_1 은 봉투의 마무리 너비, b_2 는 접힌부분의 접혀 들어간 너비, c 는 묶는선 폭, d 는 손잡이끈 폭, f 는 묶는선 길이임.

2. 그림중의 사선부분 및 검게 칠해진 부분은 열접합 부분을 나타내고 사선부분은 평접합 부분을 검게 칠해진 부분은 거싯접합 부분을 나타냄.

□ 음식물 전용봉투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거창군 로고)		
쓰레기 봉투 (0ℓ) -음식 쓰레기 전용 -		
1. 이 봉투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입니다.		
2. 과일껍질, 채소찌꺼기, 음식찌꺼기등 음식물 쓰레기의 물을 꼭 짜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거 창 군 수		
연락처 : 거창군 환경녹지과 연락처(940-3209)		
이 봉투는 공업진흥청의 재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 한국프라스틱 규격 제품임.		
제작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별표 4】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

1.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현 행	개 정 안
<p>1.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p> <p>쓰레기수입운반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 + 제작비+판매이익</p> <p>(주)</p> <p>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플카, 밀폐식 압축용기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p> <p>2) 수수료자립도는 거창군의 기존 자립도·대행체제에서 직영으로 변경될 때의 부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 부담률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하여야 함.</p> <p>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p> <p>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를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수수료 자립도×0.09로 산정함.</p>	<p>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봉투판매금액+재활용품 판매수입+대형폐기물 수수료수입+기타수입(과태료 등))÷ 연간 쓰레기 총 처리비용</p> <p>나. 주민부담율 (봉투 수수료 자립도) 봉투판매금액÷실제 주민배출 쓰레기 실 처리비용</p> <p>다. 봉투가격의 산정(최종판매가격) ℓ 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 +판매수수료</p> <p>주)</p> <p>1. 쓰레기 총 처리비용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과 매립·소각 등에 반입 처리되는 일련의 비용의 합</p> <p>2. 주민부담율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과 매립·소각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판매가격 산정시에는 목표치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투판매금액 : 규격봉투판매금액+무상 지급봉투, 공공용봉투 사용을 판매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 실제 주민배출 쓰레기 처리비용 :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 부상지급봉투 및 공공용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한 쓰레기 운반처리 비용

현행	개정안
	<p>3. ℓ 당 처리비용 연간 총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용량(규격별 합산), 무상 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 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 총 처리비용 ÷ 연간 사용된 봉투 총 용량)</p> <p>- 총 처리비용 :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p> <p>- 처리비용 중 수거·처리원가 : 수거원가는 노무비, 경비, 적환장관리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처리원가는 수송비, 반입료,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직영처리비 위탁처리비(대행업체 처리비)등)</p> <p>※ 처리비용 항목에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p> <p>4. 봉투제작비 :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단가(조달단가 등) 적용</p> <p>5. 판매이익 : 9.0%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ℓ 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봉투수수료자립도×0.09로 산정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p> <p>-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수수료자립도} \times \text{주민부담율} + \text{봉투제작비}) \times \text{판매수수료율}] \div (1 - \text{판매수수료율})$</p> <p>6. 봉투 최종판매가격 : 10원단위로 절상</p>

2.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 현행과 같음

【별표 5】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배출 및 수수료 징수 기준**

《품목 추가》

(단위 : 원/개당)

현행			개정안							
품명	규격	처리비	종별	규격	처리비					
냉장고	500ℓ 이상	8,000	가 전 제 품 류	현행과 같음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4,000								
텔레비전	42인치이상	5,000				현행과 같음				
	12인치이상	3,000				현행과 같음				
세탁기	모든규격	4,000				현행과 같음				
에어컨	264㎡이상	10,000				가 전 제 품 류	현행과 같음			
	66㎡이상	5,000								
	66㎡미만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4,000							현행과 같음	
	높이1m미만	2,000							현행과 같음	
탈수기	모든규격	2,000							현행과 같음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2,000							현행과 같음	
신설			청소기	모든규격	2,000					
신설			가습기	모든규격	2,000					
신설			다리미	모든규격	2,000					
신설			팩스기기	모든규격	5,000					
신설			오디오	대형 중소형	7,000 5,000					
신설			컴퓨터	모든규격	5,000					
			오락기	29인치이상	15,000					
				29인치미만	10,000					
				20인치미만	7,000					
신설			스피커	모든규격	3,000					
신설			온풍기	264㎡이상	8,000					
				66㎡이상	6,000					
				66㎡미만	4,000					
신설			난로	모든규격	3,000					
신설			전자렌지	모든규격	5,000					
신설			선풍기	모든규격	3,000					

현행			개정안			
품명	규격	처리비	종별	규격	처리비	
장농	120cm장1쪽	15,000	가 구 류	현행과 같음		
	90cm장1쪽	10,000				
서랍장	5단이상	4,000		현행과 같음		
	4단이하	2,000				
식탁	6인용이상	5,000		현행과 같음		
	6인용이하	4,000				
화장대	모든규격	3,000		현행과 같음		
장식장	모든규격	4,000		현행과 같음		
응접세트	장의자	5,000		현행과 같음		
	의자	2,000				
침대	1인용	10,000		현행과 같음		
	1인용매트리스	5,000				
	2인용	15,000				
	2인용매트리스	8,000				
책상	양수,대형	5,000	현행과 같음			
	편수,소형	4,000				
신발장	모든규격	2,000	현행과 같음			
문갑	모든규격	3,000	현행과 같음			
<u>신설</u>			<u>쇼파</u>	1인용	5,000	
<u>신설</u>				소형4인용	7,000	
<u>신설</u>				대형6인용이상	10,000	
<u>신설</u>				<u>밥상</u>	4인이상	3,000
<u>신설</u>					4인미만	2,000
<u>신설</u>				<u>싱크대</u>	모든규격	5,000
<u>신설</u>				<u>책꽂이</u>	모든규격	3,000
<u>신설</u>				<u>의자</u>	모든규격	3,000
<u>신설</u>			<u>옷걸이</u>	모든규격	2,000	
캐비닛	모든규격	4,000	생 활 용 품	현행과 같음		
화일캐비닛	4단이상	3,000		현행과 같음		
	3단이하	2,000				
피아노	어프라이트	10,000	현행과 같음			
	그랜드	15,000				

【별표 5의3】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 : <삭제>

【별표 6】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현행			개정안		
종류	품목	배출요령	종류	품목	배출요령
1. 종이류	생략	생략	1. 종이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캔류	생략	생략	2. 캔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병류	생략	생략	3. 병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영농폐기물류	생략	생략	4. 영농폐기물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고철류	생략	생략	5. 고철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플라스틱류	생략	생략	6. 플라스틱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의류	생략	생략	7. 의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음식물류	생략	생략		삭제	
9. 기타류	생략	생략	9.기타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신철			10.형광등	형광등	- 지역별 배출용기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배출
11. 신철			11.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 (1차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해 배출

현 행			개 정 안		
종류	품목	배출요령	종류	품목	배출요령
12. <u>신설</u>			12. <u>합성 수지류</u>	PET,PCV,PE,PP,P S,PSP재질의 용기 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 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 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스티로폼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 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 포장재	- TV·냉장고·세탁기 · 에어컨디셔너·오 디오·개인용컴퓨터 · 이동전화단말기 제 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 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 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 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나 물질로 코팅된 발포 스티렌은 제외
13. <u>신설</u>			13. <u>비닐 봉투류</u>	- 1회용비닐봉투	- 1회용 비닐봉투만을 따로 모아 일정한 양 이되면 배출 -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흰색봉투와 검은색 봉투 등 분리하여 같 은 색상의 비닐봉투 에 담아 배출 ※ 이물질과 수분을 제거후 배출 ※ 음식물쓰레기 등 이물질을 담았던 비닐봉투는 제외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과항목	위반횟수			적용법	부과항목	위반횟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 ~ 16 (생략)				(현행과 같음)				
	17. <u>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u>								
	가. <u>감량의무 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u>	20	50	100	(삭제)				
	나. <u>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u>	10	20	30	(삭제)				
	18. <u>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2조)</u>	100	300	500	(삭제)				